WIPO PCT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CT NEWSLETTER

www.wipo.int/ko/web/pct-system 2025 년 10 월 | 2025/10 호

제 32 차 PCT 국제기관회의(PCT/MIA)

제 32 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25 년 10 월 29 일부터 31 일까지 가상회의로 개최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제 3 자 정보제공(third party observation) 제도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분석하도록 국제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비서면 개시(non-written disclosure)가 관련 선행기술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견해서에 비서면 개시가 인용되는 방식을 변경하며, 2028 년 1 월 1 일부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관청이나 기관과 국제사무국간의 제안된 모델협정(model agreement) 초안 사용을 허용하도록, PCT 규칙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또한 PCT 최소문헌 전담반(PCT Minimum Documentation Task Force)과 서열목록 전담반(Sequence Listings Task Force)의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서열목록 처리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국제기관이 PCT 처리 측면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생성하고 교환하기 위해 XML 이나 JSON 을 사용하는 WIPO 표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의제 초안과 작업문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88990

본 회의 전에, PCT 국제기관회의 품질 서브그룹(Quality Subgroup)의 비공식 회의가 2025 년 10 월 27 일 및 28 일에 가상회의로 개최됩니다.

유럽 특허청(EPO),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컬러 및 회색조(grayscale) 도면 허용

2025 년 10 월 1 일부로 유럽 특허청은 컬러 또는 회색조 도면이 동 청의 전자출원 수단을 통해 제출되는 경우, 흑백으로의 변환 없이 해당 도면의 제출을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유럽 특허출원 및 후속 전자제출에 대해 이용 가능하지만, 수리관청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에 접수된 PCT 출원이나 국제단계에서 제출된 다른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년 10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PCT 출원의 경우 수리관청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은 컬러 및 회색조 도면을 비공식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여 국제사무국에 전송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PATENTSCOPE 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국제공개를 포함한 국제단계에서의 국제출원의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국제사무국은 컬러 및 회색조 도면을 흑백으로 변환합니다. 이에 따라 컬러 및 회색조 도면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2025 년 10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유럽단계에 진입하는 Euro-PCT 출원의 경우 지정/선택관청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은, PATENTSCOPE 에서 컬러 및 회색조 도면을 열람할 수 있고 이 사실이 해당 국제공개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면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 2025 년 10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수정 도면에 컬러 또는 회색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원래 제출된 도면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유럽특허조약(EPC) 제 123 조(2)).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EP) 및 국내편, 요약 (EP) 업데이트)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의 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유럽 특허청 간 시범 프로젝트 연장

지난 2020 년 12 월 1 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유럽 특허청은 중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PCT 출원인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나 국제사무국에 영어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외에도 유럽 특허청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유럽 특허청 간의 협정에 따라 해당 시범 프로젝트는 2026 년 12 월 1 일부터 2031 년 11 월 30 일까지, 연간 최대 3,000 건의 국제출원에 대해 5 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해당 시범 프로젝트 참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 특허청에 국제예비심사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o.org/en/news-events/news/epo-and-cnipa-extend-pct-isa-pilot-until-2031

(영어)

https://www.cnipa.gov.cn/art/2025/9/24/art_53_201732.html (중국어)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CN) 업데이트)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EP 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청은 2026 년 1 월 1 일부로 EPO 온라인 출원(EPO Online Filing (eOLF))을 중단하고 eOLF 를 통해 유럽 특허청에 제출된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과 관련된 기타 문서와 서신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ePCT, EPO 온라인 출원 2.0(통합된 ePCT 포함) 및 EPO 비상 업로드 서비스(EPO Contingency Upload Service)를 통해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과 관련된 기타 문서와 서신을 접수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EP) 업데이트)

GB 영국

2026 년 1 월 1 일부터 영국 지식재산청은 eOLF 를 통한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과 관련된 기타 문서와 서신의 제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오직 ePCT 를 통해 제출된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과 관련된 기타 문서와 서신만 접수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GB) 업데이트)

SE 스웨덴

스웨덴 지식재산청(PRV)은 2025 년 12 월 11 일부터 eOLF 를 통한 국제출원 및 관련 문서의 제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웨덴 지식재산청은 이러한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2025 년 9 월 11 일, 온라인 출원 SE(Online Filing SE)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년 12 월 11 일부터 동 청에서 이용 가능한 출원 수단은 ePCT 와 온라인 출원 SE 두 가지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SE) 업데이트)

예정된 웨비나: “PCT 에서 국내단계 진입하기 - 미국,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실무 및 주요 고려사항” (일본어)

본 웨비나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유럽 특허청(EPO)에서의 국내단계 진입 절차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각 관할지역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춘 일본 전문가들이 각 관청에서의 절차들의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본 온라인 웨비나는 일본어로 진행되며, 2025 년 11 월 20 일 목요일 (도쿄시간 기준) 오후 2 시부터 5 시(중앙유럽 표준시(CET) 기준 오전 6 시부터 9 시)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무료입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전화번호)

호주 특허청은 동 청의 전화번호 중 하나가 변경되었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변경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1300 65 10 10 (현지) (61-2) 6283 2999 (국제)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 (AU) 업데이트)

KR 대한민국 (관청명, 이메일/인터넷 주소)

대한민국 특허청(KIPO)의 관청명, 이메일 주소 중 하나 및 인터넷 주소가 2025 년 10 월 1 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청명: 지식재산처(MOIP)(대한민국)

이메일: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 isamoip@korea.kr

인터넷: https://www.moip.go.kr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 (KR) 업데이트)

주간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PCT 출원인 가이드 업데이트 – PCT 출원인 가이드 월별 업데이트 및 개정사항 공식 공지 모음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시행세칙 개정

개정된 PCT 시행세칙이 2025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된다고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에 이어 이제 중국어로, PDF 형식으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zh/web/pct-system/texts/index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PCT 기초 웨비나 시리즈

PCT 뉴스레터 2025/06 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특허절차는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PCT 기초 웨비나 시리즈가 올해 출시되어, 특허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국적 특허보호까지, PCT 절차에 대해 신규 사용자들을 안내합니다. 예정된 웨비나에 대한 등록과, 이미 진행된 에피소드의 녹화자료 및 참고자료 이용은 아래에서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en/web/pct-system/training/pct-basics-webinar-series

www.wipo.int/zh/web/pct-system/training/pct-basics-webinar-series

제 1 편 “모든 것은 발명에서 시작된다”(It all starts with an invention…) 및 제 2 편 “PCT 출원의 첫 단계”(First steps in filing a PCT application)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 시리즈 제 2 편의 중국어 강의가 2025 년 10 월 30 일 베이징시간 기준 오후 4 시부터 5 시(중앙유럽 표준시(CET) 기준 오전 9 시부터 10 시)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웨비나 시리즈 제 1 편의 한국어 강의가 2025 년 11 월 6 일 목요일 서울시간 기준 오후 4 시 30 분(중앙유럽 표준시(CET) 기준 오전 8 시 30 분)에 진행됩니다. 등록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웨비나 시리즈 제 1 편 및 제 2 편의 일본어 강의가 2025 년 11 월 13 일 목요일 도쿄시간 기준 오후 5 시부터 6 시(중앙유럽 표준시(CET) 기준 오전 9 시부터 10 시)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CT 기초 웨비나 시리즈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해당 언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en/web/pct-system/training/pct-basics-webinar-series

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세미나 고급과정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2025 년 10 월 13 일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사무국의 PCT 전문가들이 PCT 제도에서의 모범 실무사례와 국내진입 및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자료는 모두 PCT 교육 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wipo.int/ko/web/pct-system/training/index).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한 WIPO 심포지엄

지난 2025 년 9 월 18 일과 19 일 양일간 WIPO 는 최초로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SEP)는 특정 기술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행사에는 전 세계의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표준필수특허와 그 라이선싱에 대한 정책/법률/경제적 측면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2025/wipo-symposium-on-standard-essential-patents.html

녹색기술 보고서(Green Technology Book) EXPO25 특별판 | 파리협정 10 주년, 기후행동 추진



10 월 초, WIPO 는 파리협정 10 주년을 기념하여 녹색기술 보고서 EXPO25 특별판을 출간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이번 특별판은 세계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떠오르는, 그리고 새로 나올 해결책들을 조명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첨단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번 특별판의 주요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혁신사례를 소개하며, WIPO GREEN 이 기후행동을 위한 녹색기술 확장의 촉매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줍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web-publications/green-technology-book-expo-edition/en/index.html

PCT 뉴스레터 2025/09 호 중소기업(SME) 지원시리즈 정정사항

“PCT 중소기업(SME) 지원시리즈(2 편): 중소기업으로서 출원비용 관리하는 방법”의 “중소기업(SME) 대상 IP 관청의 수수료 감면” 부분에서 괄호 안에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은 초소기업(micro-entities) 대상 30% 감면 제공”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은 국제단계에서의 수수료 감면을 논의하기에 해당 내용은 부정확합니다. 유럽 특허청에서의 초소기업 대상 30% 감면은 오직 유럽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괄호 안의 내용은 삭제되고 관련 자료들은 수정되었습니다.

유럽 특허청에서의 초소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epo.org/en/service-support/faq/applying-patent/fee-reductions-small-and-micro-entities/which-fees-are-reduced

유용한 도움말

국제사무국에 PCT 규칙 92 의 2 에 따라 성명 또는 명의 변경기록 청구하기

Q: 저희 회사는 한 PCT 출원에 출원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은 새로운 사명으로 영업 중입니다. 국제사무국에 이런 변경사항을 기록해 줄 것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ePCT 를 사용 중인데, “성명 변경”과 “명의 변경”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제출해야 합니까?

A: 명의 변경인지 성명 변경인지의 문제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 보통 회사가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그렇게 표시된 경우 명의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명의 변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어떤 종류의 변경사항의 기록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리는 것은 출원인의 책임입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별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특정 사례에 대한 결정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의구심이 들면 변호사와 같은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나리오가 새로운 성명의 명의 변경과 관련된 경우 성명 변경은 “명의 변경” 선택에 내포되어 추가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PCT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에는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변경기록을 위한 “액션”이 있어 올바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은,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선택된 옵션을 기록하고 해당 옵션은 변경 통지서에 반영됩니다(서식 PCT/IB/306). 국제단계에서는 잘못된 표시가 출원 처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내단계에서는 지정관청(DO)이 변경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 변경사항을 정당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해당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기록상 현재 출원인이나 대리인(applicant or agent of record)이 PCT 규칙 92 의 2 에 따라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기록상의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청구서만 있으면 됩니다. 국제사무국은 변경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검증하거나 요구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정관청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미 기록된 대리인보다)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PCT 규칙 90.1(a) 및 90.4).

그러나 변경을 청구하는 자가 기록상의 출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출원인인 경우 국제사무국은 청구된 변경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기록상의 출원인의 서명이 있는 양도문서, 상업등기부 초본(extract), 또는 예를 들어 법인 출원인이 파산한 경우 관리인(administrator)의 문서 등입니다. 어떤 문서를 제출하든지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PATENTSCOPE 의 “서류” 탭에 업로드 됩니다. 따라서 기밀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출원인이 새로운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고 해당 대리인이 변경기록을 청구하는 자인 경우, 새로운 대리인은 출원인 및 대리인 변경기록을 위해 새로운 출원인의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청구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며, 중요한 것은 수리관청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서 접수하는 날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사무국이 제네바 시간을 기준으로 30 개월의 마지막 날 오후 11 시 59 분까지 청구서를 접수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히 기한 만료가 임박한 경우 변경 청구서를 수리관청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 ePCT 액션을 통해 직접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사무국에서 30 개월의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위에 언급된 대로 변경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통지서에는 접수 날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지서 자체가 국제사무국이 제때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증거입니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지정관청들에 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실제로 변경사항은 PATENTSCOPE 의 서지정보 탭에도 반영되며, ePCT 를 사용하는 관청들은 ePCT 에서 해당 변경사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이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데 특별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변경사항이 국제단계에서는 기록될 수 없으며 각 지정관청에 국내절차(보통 관청별 수수료 발생)에 따라 별도로 청구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변경기록 청구에 대한 추가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편, 단락 11.018 내지 11.022 및 아래 PCT 뉴스레터 호들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 호	(대리인 변경에 따른 ePCT 내 접근권한 관리)
2022/07-08 호	(ePCT 에서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적으로 여러 국제출원에 대한 변경 청구하기)
2016/12 호	(출원인 변경 시 양도문서 제출하기)
2002/06 호	(출원인 또는 대리인 변경기록 청구 시 제출할 문서)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BR 브라질 (수수료 규정(fee schedule) 업데이트)

BG 불가리아 (EUR 로 수수로 납부 허용)

CO 콜롬비아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NO 노르웨이 (관청 주소)

PT 포르투갈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유라시아 특허기구,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